

KDS 34 99 15 : 2024

시설물 관리

2024년 12월 10일 제정
<http://www.kcsc.re.kr>

KC CODE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조경설계기준	• 조경설계기준 제정	제정 (1999)
조경설계기준	• 조경설계기준 개정	개정 (2002)
조경설계기준	• 조경설계기준 개정	개정 (2007)
조경설계기준	• 조경설계기준 개정	개정 (2013)
KDS 34 0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제정 (2016.6)
KDS 34 99 15 : 2024	• 조경설계기준 코드내용 정비에 따른 시설물관리 제정	제정 (2024.12)

제 정 : 2024년 12월 1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참고 기준	1
1.3.1 관련 법규	1
1.3.2 관련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1
1.6 해석과 설계원칙	1
2. 조사 및 계획	1
2.1 조사	1
2.2 계획	2
3. 재료	2
3.1 재료 일반	2
4. 설계	2
4.1 법률 관련 조치	2
4.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2
4.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3
4.1.3 “물환경보전법” 관련	3
4.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3
4.2 관리계획	3
4.2.1 연간 관리계획	3
4.2.2 예방관리	3
4.2.3 사후관리	4

1. 일반사항

1.1 목적

조경시설물, 구조물, 관련 설비 및 포장 등으로 조성된 조경공간의 점검과 보수 및 개선에 의한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1) 조경공간의 조경시설, 구조물 및 포장의 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 (2) 관리의 구분은 KDS 34 99 05 (1.1)에 따른다.
- (3) 주요내용
 - ① 법률 상 신고 및 관리 대상의 조치와 예방관리
- (4) 사후관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거나, 별건의 설계로 시행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 (1) 시설물 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 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 (1) 조경시설·유희시설 등 대상 시설과 목재, 철재 등의 소재에 따라 관리 항목이 상이하므로 대상 시설의 유형, 소재 등을 구분하고, 공간 및 시설의 면적, 체적 등 작업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한다.
- (2) 관리대상 시설 및 부속자재의 내구연한(耐久年限), 노후도를 파악하여 보수 및 정비 계획에 적용한다.
- (3) 시설물의 파손, 변형 등 보수이력을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관리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2.2 계획

-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구 연한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 교체 또는 개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 (2) 편의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 (1) KDS 34 10 00, KDS 34 50 00, KD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 (2) 보수 및 개선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공되어 있는 자재와 성능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

4.1 법률 관련 조치

4.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1) 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①항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① 공원시설 자체의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로서의 성능 확보
 - ② 유희시설 : 초기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안전점검 실시, 사용제한, 보수 등의 조치와 수리, 개량, 철거, 갱신 등의 조치
 - ③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3-1 (3) ~ (12)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 등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②항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 ②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 ③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 ④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4-1 의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한 관리

4.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 (1)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동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법 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3)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에 따라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4.1.3 “물환경보전법” 관련

- (1) 법 제2조 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의 대상으로 시설이용기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2 관리계획

4.2.1 연간 관리계획

- (1) 설계대상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 등 조경공간 전반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관리계획에는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점검 항목과 관리작업의 시기, 대상 및 수량, 내용,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3) 수경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및 교량 등의 시설물은 관련법규 및 시공시 제출된 유지관리 계획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2.2 예방관리

- (1) 시설물 사양에 따른 소모자재의 보충, 내구 연한에 의한 교환, 미관 유지를 위한 방부, 방청 및 도장 등을 설계한다.
- (3) 시설물의 구성 및 기능, 조작 및 점검방법, 점검표, 이상발견시의 대응 및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한다.
- (2) 이용활동 관찰 결과에 따른 시설이전, 부분교체 등의 개선작업도 설계한다.

4.2.3 사후관리

(1) 일상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와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로 발생 직후에 행하여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후 정산 등의 시행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안이철	(주)수성엔지니어링/전무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주)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주)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주)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주)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주)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주)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주)수프로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KDS 34 99 15 : 2024

시설물관리

2024년 12월 10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 kila96@chol.com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 kila96@chol.com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kcsc@kict.re.kr
<http://www.kcsc.re.kr>